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적 모임 제한 안내

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7.18.)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와 휴가철 기간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, 풍선 효과에 의한 전국적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**수도권 외 지역**을 대상으로 **사적 모임**에 한해 2021.7.19.(월)부터 아래와 같이 **동일한 조치**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3.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본 조치가 **감염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여 확산세를 꺾고자 하는 조치**임을 고려, 내부 직원은 물론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
 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, **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,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 적극 처분을 검토**하여 주시고,
 -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 -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: 2021. 7. 19.(월) 0시 ~ 2021. 8. 1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14개 시·도

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내용: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□ 사적 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- (사적 모임)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- (예외) 예방접종 완료자,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, 돌봄(아동, 노인 등),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, 돌잔치(최대 16명), 상견례(최대 8명),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

불입: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4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○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
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14개 시도지사



주무관	홍명기	행정사무관	박은경	생활방역팀장	심은혜	사회전략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	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	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	2021. 7. 18.		
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	이기일	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관	강도태	양사고수습본부	권덕철		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(2021. 7. 18.) 접수
중앙사고수습본부-22468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

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5

팩스번호 044-202-0000

/ mk7069@korea.kr

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